

#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28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11. 14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: 2025. 11. 14.
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5. 11. 26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)

#### 가. 개정이유

고성군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반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여 소비자로서의  
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하여 운영자와 사용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
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별표 2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(안 제13조)

#### 다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: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제2항,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  
제3항,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

2)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#### 3)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개선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37861(2025. 9. 30.)호]

#### 4) 기 타

가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5-1560호

- 예고기간: 2025. 9. 30.~2025. 10. 21.(21일간)

- 예고결과: 의견없음

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- 라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마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#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#### ○ 개정 목적

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청소년시설 이용 시 이미 낸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사유, 반환 범위 등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

#### 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13조) 이용자가 사용료를 반환할 상황이 생겼을 때 조례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의 공정거래위원회고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을 준용하던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고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<별표 II> 품목별 해결기준 <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(2개 업종) >을 적용하여 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였음.

#### ○ 종합검토 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비대칭적으로 규정하던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### 5. 토 론: 없음

### 6. 심사결과: 2025. 11. 26. 원안가결

### 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